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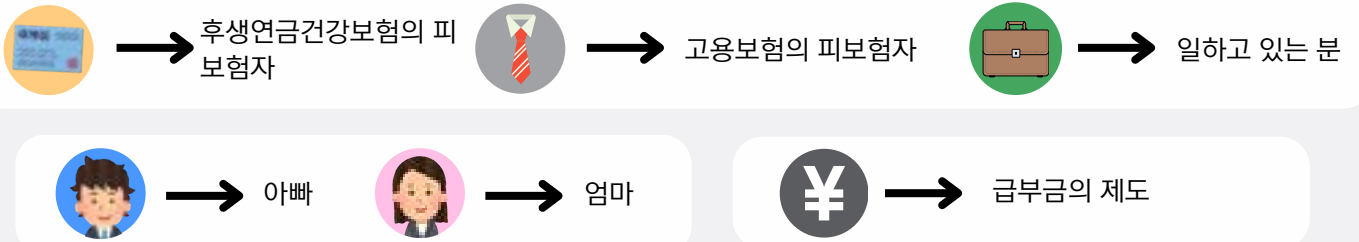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신청 할 수 있는 휴가나 급부금 제도가 있나요?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 신청 할 수 있는 휴가나 급부금 제도는 복잡합니다. 각종 휴가 및 급부금은 요건이나 필요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일러스트를 참고하여 하기의 휴가급부금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참고 사례

CASE 1 : A씨 (여성)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으로 반년정도 영어교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28시간 밖에 일하지 못해서 수입이 적어, 남편의 부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 해당되는 휴가: **산전산후휴가**
- 해당되는 급부금: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아동수당** ※수입 요건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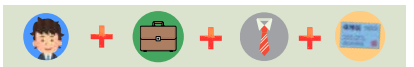
CASE 2: B씨(여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으로,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인 남편은 일하고 있지 않고, 저의 부양에 들어가 있습니다.

- 해당되는 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업**
- 해당되는 급부금: **출산수당금**, **출산육아일시금**, **출산육아응원교부금**, **육아휴업급부금**, **아동수당** ※수입 요건에 따름

CASE 3 : C씨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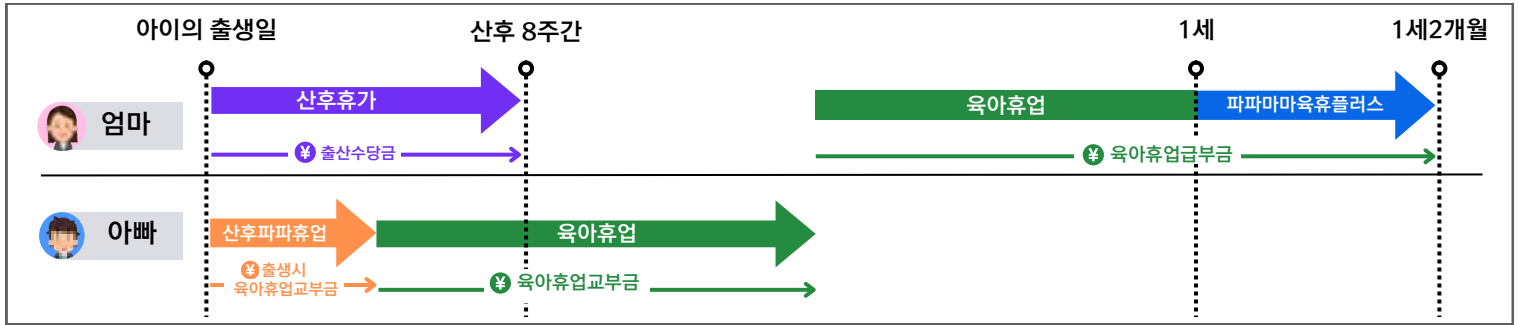


「기능」의 재류자격으로, 5년이상 풀타임으로 셰프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육아휴업 취득 후에는 일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 해당되는 휴가: **산후파파육아휴업**, **육아휴업**, **파파마마육아휴업플러스**
- 해당되는 급부금: **출산시육아휴업급부금**, **아동수당** ※수입 요건에 따름, **육아휴업급부금**

부부가 취득할 수 있는 휴가 및 급부금의 구체적인 예

※ “산후휴가” 및 파파마마육휴플러스 기간을 포함하는 “육아휴업” 을 취득한 경우



각종휴가급부금 상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어린이가정청의 홈페이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

산전산후휴가

Sanzen sango kyūka



- 산전휴가 : 6 주간 (출산일을 포함함)
노동자가 청구한 경우, 그 기간은 회사가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 산후휴가 : 8 주간
산후 6주간은 강제 휴업. 그 이후는 노동자가 청구하며, 의사가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업무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산전산후휴가의 취득에 관해서는 근무처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출산수당금

Shussan teate-kin



산전산후휴가를 취득해 일을 쉬고, 급여의 지불이 없었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금 개시일의 이전 12개월간의 표준 보수 일액의 3분의 2상당**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후생연금건강보험의 피보험자만이 대상입니다. 피부양자는 대상 외로 됩니다.

근무처를 통해, 가입되어있는 건강보험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출산육아일시금

Shussan ikuji ichiji-kin



건강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출산한 경우 원칙적으로 **50만엔**이 지급됩니다.

※임신주수가 22주가 되지 않는 등,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출산의 경우, 지급액은 48.8만엔

지급에 대해서는 출산할 경우에 진찰받을 예정인 의료기관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출산육아지원교부금

Shussan kosodate ōen kōfu-kin



- 출산지원기프트 : 5만엔 상당 (임산부 1인당)
임신 신고 시 면담 실시 후 지급됩니다.
- 육아지원기프트 : 5만엔 상당 (신생아 1인당)
출생신고~영아가정 전 호 방문 시까지 면담 실시 후 지급됩니다.
※지급 형태는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 : 출산육아 관련 상품권 (쿠폰) 등



거주하시는 시구청촌의 육아 세대 포괄 지원 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시육아휴업 (산후아빠육아휴직)

Shusseiji ikuji kyūgyō (Sango papa ikukyū)



산후 8주 이내 4주(28일)를 한도로, 2회까지 나누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노동자가 합의한 범위에서 휴업 중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생일로부터 계산해 8주를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노동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노사협정 체결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업 2주 전까지 근무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로 나누어 취득할 예정인 경우라도, 신청은 한번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시육아휴업급부금

Shusseiji ikuji kyūgyō kyūfukin



산후 아빠 육아휴업을 취득한 분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업 개시일 전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 12개월 이상의 각 달은 임금이나 보수의 지급 대상의 일수가 11일 이상(혹은 80시간 이상)일 것.
- 휴업 기간 중의 취업 일수가 최대 10일(혹은 80시간) 이하일 것.
-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노동자는 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8주를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노동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지급액 = 휴업 개시시 임금 일액 (출생 시 육아 휴업 개시 전 가장 최근 6개월간의 임금 총액 ÷ 180) × 휴업 기간 일수 (28일이 상한) × 67%



출생일로부터 계산하여 8주가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무처를 통하여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출생일→10월 15일 · 출생일부터 8주간 → 12월 9일 · 신청 가능한 기간→12월 10일부터 2월 말까지)

육아휴업

Ikujī kyūgyō



원칙적으로, **자녀가 한 살이 될 때까지**의 연속된 기간에 2회까지 나누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조치로서 1세 6개월(최장 2세)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1세 6개월(또는 2세)까지의 기간에 노동계약의 만료가 분명한 경우는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 ※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노사협정 체결에 의해 취득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휴업 1달전까지 근무처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육아휴업급부금

Ikujī kyūgyō kyūfukin



육아 휴업을 취득한 분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개시일 전 2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며, 이 12개월 이상의 각 달은 임금이나 보수 지급 대상의 일수가 11일 이상(혹은 80시간 이상)일 것.
- 휴업 기간중의 취업 일수가 최대 10일(혹은 80시간) 이하일 것.
-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노동자는 자녀가 1세 6개월(또는 2세)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노동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지급액 = 휴업 개시시 임금 일액(출생 시 육아 휴업 개시 전 최근 6개월간의 임금 총액 ÷ 180)
 × 지급 일수(원칙 30일간) × 67%(육아 휴업 개시부터 181일째 이후는 50%)

첫 회 신청은 육아 휴업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근무처를 통해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 육아 휴업 개시일→7월 10일, 4개월을 경과한 날→11월9일, 신청 가능한 기한→7월10일부터 11월 말까지)

※육아 휴업을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는 2회차의 육아 휴업에 관련된 신청도 필요합니다.

파파마마 육아휴업 플러스

Papa mama ikukyū puras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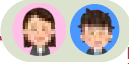


부모 모두 육아 휴업을 하는 경우,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1세 2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산후 아빠 육아 휴업 기간, 또는 산전산후 휴업기간을 포함) 휴업이 취득 가능합니다.

- 육아 휴업을 받으려는 본인이 아이의 1세가 되는 날 이전에 육아 휴업을 하고 있을 것
- 본인의 육아 휴업 개시 예정일이 아이의 1세 생일 이전일 것
- 본인의 육아 휴업 개시 예정일이 배우자가 취득한 육아휴업의 첫 날 이후일 것

※파파마마 육아 휴업 플러스를 취득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업 급부금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 1개월 전 까지 근무처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어린이·육아지원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에 의하여 2024년10월분부터 제도내용이 크게 변경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졸업까지(15세 생일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 분으로 소득이 ①소득제한한도액 미만, 또는 ②소득제한한도액 이상 소득상한한도액 미만의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0월, 2월에 각 달의 전월 분까지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①소득제한한도액 미만인 분 (1인당 월액)

- 3세 미만 : 일률 **15,000엔**
- 3세 이상 초등학교 수료 전 : **10,000엔** (셋째 이후는 **15,000엔**)
- 중학생 : 일률 **10,000엔**

②소득제한한도액 이상소득상한한도액 미만인 분 (1인당 월액)

- 일률 **5,000엔**

필요하신 절차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시구청촌에 상담해 주십시오.

※편부모 가정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는 별도의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주하고 계신 시구청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생활취업노동 가이드북](#)

(제4장 출산육아)

출입국 재류 관리청



[아동수당 기본 정보](#)

(일반 재단 법인)
 자치체 국제화 협회



[육아 차트](#)

[임신출산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

어린이 가정청



[외국인 주민을 위한 육아 지원](#)

[사이트](#)

(공익 재단) 카나가와 국제 교류 재단



• 자신이 휴가급부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 헬로워크, 거주하고계신 시정촌, 직장등 각 신청처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임신출산육아 휴업등의 취득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 홋카이도 노동국과 상담하여 주십시오.

•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나 통역이 필요한 경우 :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통역자가 있는 헬로워크 일람](#)

후생노동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상담창구나 핫라인](#)

후생노동성

